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 (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825 발의연월일: 2021. 6. 16.

발 의 자:임이자・김성원・金炳旭

김영식 • 백종헌 • 유경준

이종성 • 박대수 • 이헌승

안호영 · 홍석준 의원

(11인)

제안이유

전 세계에 폭염, 한파, 홍수 등 강도 높은 기후재난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국제사회는 「파리협정」을 채택하여 모든 당사국이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신기후체제를 구축하였음.

기후위기는 환경문제로써 인류의 생존을 위협함과 동시에 경제와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단순히 환경오염을 저감하는 차원 에서 나아가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국가발전 전략의 추진 차 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음.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녹색기술·녹색산업의 육성과 녹색건축물 및 녹색생활의 정착 등을 통해 기후위기를 해소하고 지속가능발전에도 기여하는 녹색

성장 정책을 추진한 바 있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0%를 포괄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 래제 출범의 기반을 다지는 등 그간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이끌어 왔으며, 지난 2019년 우리나라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초로 감소세로 돌아서도록 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음.

그러나 최근 10여 년간 다양한 기후재난의 강도와 빈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고, 특히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2018년 발간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통해 지구 환경의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지구평균기온 상승을 1.5℃ 수준으로 억제해야 하며, 이를 위해 2050년까지 전세계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음.

이러한 변화된 상황에 맞춰 우리나라도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음.

이 법안은 과거의 녹색성장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유산으로 계승하여 당시보다 한층 더 시급해진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과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녹색성장 시책들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우선 제명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으로 하고 법률의 목적 및 기본원칙에 탄소중립 달성과 함께 녹색성장 촉진을 명시함과

동시에 기존의 녹색성장위원회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확대·개 편하여 이 법안이 녹색성장 담론을 계승한다는 관점을 명확히 하였음.

기존의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병합한 탄소 중립 녹색성장 종합계획과 이에 부합하는 광역 및 지역단위의 종합계 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탄소중립 의 달성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주요 시책들을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녹색성장 추진 및 정의로운 전환의 4개 분야로 분류·체계화하여 향후 다가올 기후위기의 영향을 완화하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며,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국가 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급격한 탄소중립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소외되는 지역과 계층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국가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상황에 대응하여 2050년까지 국내 온실가스 순배출량 영(零)을 목표로 하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기후 위기 적응 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녹색성장 기반 조성과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의 육성을 통해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며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함

- 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정부는 205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영(零)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달성하여야 하고, 국가탄소중립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여야 함(안 제9조).
- 다. 정부는 국가탄소중립목표와 중장기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10년을 계획기간으로하는 광역 탄소중립 녹색성장 종합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탄소중립 녹색성장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 라. 기후위기 대응 및 적응, 탄소중립 녹색성장 등에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기후위기 대응 및 적응, 탄소중립 녹색성장등에 관련된 주요 정책, 목표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9조).
- 마. 정부는 공공부문 및 온실가스 다배출업체의 온실가스 목표를 관리하고, 효율적인 국가탄소중립목표 및 중장기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하여 총량제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함(안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 바. 정부는 자동차의 평균에너지소비효율 개선 등 교통부문의 온실가 스 관리, 녹색건축물 등급제 도입 등 녹색건축물 확대, 도시 탄소중립 사업의 시행, 탄소흡수원 확충, 온실가스 감축 및 흡수기술의 육성 등의 온실가스 감축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 사. 정부는 기후위기 감시·예측, 기후위기 취약성평가,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물 관리, 친환경 농림수산의 촉진, 녹색국토의 관리 등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 아. 정부는 녹색경제·녹색산업의 육성·지원, 자원순환의 촉진, 기업의 의 녹색경영 촉진, 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 녹색기술·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 등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37조부터 제47조까지).
- 자.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조정 예상 지역 등을 공정전환특별지구로 지정하여 지원하며, 기업의 자산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탄소중립으로의 이행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안 제48조부터 제52조까지).
-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생활방식을 확산하고, 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탄소중립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 며,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생산·소비문화를 증진할 수 있

도록 범국민적인 생활 실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발적인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촉진하고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연대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안 제53조및 제54조).

카. 기후위기 대응을 효율적이며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후위 기대응기금을 설치하고 환경부장관이 이를 운용·관리하도록 함(안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 기본법안」(의안번호 제6737호)과 임종성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 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상황에 대응하여 2050년까지 국내 온실가스 순배출량 영(零)을 목표로 하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녹색성장 기반 조성과 녹색기 술 및 녹색산업의 육성을 통해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 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며 국제 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데 이바 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기후변화"란 인간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온실가스 배출 활동으로 야기되는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 2. "기후위기"란 기후변화로 인한 심각한 경제적·환경적·사회적 피해와 인간 및 생태계의 생존이 위험에 직면한 상황을 말한다.
- 3.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 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 4. "탄소중립"이란 온실가스 배출량과 이를 상쇄하는 흡수량을 합하여 온실가스 순배출량이 궁극적으로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 5. "기후위기 대응"이란 경제·환경·사회 분야 등에서 적극적이고 신속하며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말한다.
- 6. "온실가스 감축"이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거나 대기로부터 온 실가스를 흡수하는 활동을 말한다.
- 7. "온실가스 흡수"란 토지이용, 토지이용의 변화, 임업활동 및 탄소 포집저장활용기술의 이용 등에 의해 대기로부터 온실가스를 제거 하는 것을 말한다.
- 8. "기후위기 적응"이란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에 대해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조치를 통해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완화시키거나 더 나아가 유익한 기회로 촉진시키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 9.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 10. "녹색기술"이란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 11. "녹색산업"이란 경제·금융·건설·교통물류·농림수산·관광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財貨)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 12. "녹색경영"이란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 하면서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말한다.
- 13. "녹색제품"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한다.
- 14. "녹색생활"이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에 너지를 절약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 을 말한다.
- 15. "자원순환"이란 「자원순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원순환을 말한다.
- 16. "공정전환"이란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이행 과정에서 지역 주민 과 노동자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고,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의 주민이나 산업의 노동자 등을 보호함으로써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며 녹색성장으로 인한 이익은 공동체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방향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탄소중립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 1. 기후위기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토대로 경제·사회·환경적 영향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탄소중립 사회의 건설을 위해 노력한다.
 - 2. 기후위기와 에너지·자원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이 높은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한다.
 - 3.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예측과 분석에 기반하여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의 예방과 최소화를 위한 효과적인 대응 및 적응 정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한다.
 - 4. 온실가스 감축 대책과 기후위기 적응 대책 및 녹색기술·녹색산 업에 기반한 국가 성장동력 확충방안을 균형있게 고려한다.
 - 5.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확대할 수 있는 경제체제를 구축한다.
 - 6. 탄소중립 녹색성장 이행 과정에서 모든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책임과 이익이 사회 전체에 합리적으로 분배되도록 함으로써 공정전환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7. 자연자원과 환경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국토와 도시, 건물과 교통, 도로·항만·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적합하 게 개편한다.
- 8. 환경오염이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재화 또는 서비스의 시장가격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조세(租稅)체계와 금융체계를 개편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국민의 소비 및 생활 방식이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기여하도록 적극 유도한다.
- 9.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관한 새로운 국제적 동향(動向)을 조기에 파악·분석하여 국가 정책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여 국가의 위상과 품격을 높인다.
-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 등 국정의 모든 부문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의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각종 정책을 수립할 때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및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시책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탄소중립 녹색성장의 정착·확산을 위하여 사업자와 국민, 민간단체에 정보의 제공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④ 국가는 기후위기 대응 및 적응대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성과

- 를 평가하고, 국제협상의 동향 및 주요 국가의 정책을 분석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⑤ 국가는 국제적인 기후위기 대응 및 적응노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저개발국가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한다.
-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실 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시책을 수립·시행할 때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에서의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의 집 행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역주민에게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 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의 사업자, 주민 및 민간단체의 탄소 중립 녹색성장을 위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의 제공, 행정적 • 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녹색경영을 선도하여야 하며 기업 활동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녹색기 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는 등 환경 에 관한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② 사업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관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7조(국민의 책무) ① 국민은 가정과 학교 및 직장 등에서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여야 한다.
 - ② 국민은 녹색제품의 소비 및 서비스 이용을 증대함으로써 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민은 스스로가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기후변화 위기의 최종적 인 문제해결자임을 인식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 려주기 위하여 녹색생활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탄소중립 녹색성장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탄소중립 녹색성장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9조(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① 정부는 205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영(零)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달성(이하 "국가탄소중립목 표"라 한다)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국가탄소중립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중장기 국가 온실 가스 갂축목표(이하 "중장기온실가스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

- 야 한다. 이 경우 국민, 사업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 ③ 정부는 중장기온실가스감축목표를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시 재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적·기술적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중장기온실가스감축목표를 재설정할 수 있다.
- ④ 중장기온실가스감축목표를 설정하거나 재설정하려는 때에는 제 15조에 따른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중장기온실가스감 축목표의 설정 방법 및 시기, 재검토·재설정·변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① 정부는 국가탄소중립목표와 중장기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이하 "국가전략"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술적·사회적 여건의 변화, 중장기 온실가스감축목표의 재설정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국가전략을 변경할 수 있다.
 - ③ 국가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5조에 따른 탄소 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국가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중장기온실가스감축목표
- 2. 국내외 기후변화 현황 및 미래 전망과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에 관한 사항
- 3. 국내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 4. 부문별 ·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대책에 관한 사항
- 5. 기후변화에 대한 감시·예측·제공·활용 능력 현황 및 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 6. 부문별 · 지역별 기후변화의 영향과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 7. 부문별 · 지역별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 8.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계층 · 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9. 공정전환에 관한 사항
- 10. 녹색기술·녹색산업의 육성, 녹색금융 활성화 등 녹색성장 시책 에 관한 사항
- 11.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
- 12.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관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13. 기후위기 대응 및 적응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14. 탄소중립 녹색성장 관련 인력양성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 15.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 및 적응,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⑤ 국가전략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업무의 주무기관은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전략 수립·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광역종합계획)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국가탄소중립목표 와 중장기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 로 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 도"라 한다) 차원의 광역 탄소중립 녹색성장 종합계획(이하 "광역종 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는 기술적·사회적 여건의 변화, 국가전략의 변경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광역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는 광역종합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국가전략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관할 지역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가 광역종합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제15조에 따른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광역종합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지역종합계획)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탄소중립목표와 중장기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차원의 지역 탄소중립 녹색성장 종합계획(이하 "지역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술적·사회적 여건의 변화, 국가전략 또는 광역종합계획의 변경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지역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종합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국가전략 및 광역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관할 지역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종합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제 19조에 따른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제15조에 따른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종합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국가전략 등의 정책 반영)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소관 계획 및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국가 전략을 고려하여야 하며, 제15조에 따른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및 계획이 국가전략과 상충된 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 시받은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관 계획 및 정책을 수립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각각 광역종합계획과 지역종합계획을 고려하여야 하며, 제19조에 따른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정책 및 계획이 광역종합계획 또는 지역종합계획과 상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각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시받은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제시된 의견과 이에 대한 반영계획 또는 반영결과를 각각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4조(이행상황의 점검 및 평가) ① 정부는 국가전략의 이행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15조에 따른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광역종합계획 및 기초종합계획의 이행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 19조에 따른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5조에 따른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5조에 따른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제19조에 따른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이행상황의 점검·평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시받은 의견을 해당 기관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제3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제시된 의견과 이에 대한 반영계획 또는 반영결과를 각각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 고하여야 한다.
 -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평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의견의 제시·반영·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등

- 제15조(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① 기후위기 대응 및 적응, 탄소중립 녹색성장 등에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 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이 경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무총리와 제2항의 위촉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한다.
 - ④ 당연직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며, 위촉 위원은 기업,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 기후위기 대응 및 적응,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

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 2. 중장기온실가스감축목표에 관한 사항
- 3. 국가전략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4.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의 지방자치단체 확산 및 국민 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
- 5. 탄소중립 녹색성장과 관련된 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6. 탄소중립 녹색성장 이행 과정에서의 공정전환에 관한 사항
- 7.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8. 탄소중립 녹색성장과 관련된 제도개선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 9. 기후위기 대응 및 적응에 관련된 국제협력 및 국가보고서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
- 10. 기후위기 대응 및 적응에 관한 기금·재원·금융·세제에 관한 사항
- 11.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 12. 그 밖에 위원장이 탄소중립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임시회의는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5명 이상의 소집요 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기회의의 시기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사무처) ① 위원회는 심의·의결사항에 대한 사전검토를 수행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둘 수 있다.
 - ② 사무처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 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사무처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사무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기후위기 대응 및 적응, 탄소중립 녹색성장 등에 관련된 주요 정책, 목표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별로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둘수 있다.

- ② 지방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탄소중립녹색성장책임관의 지정) 탄소중립 녹색성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소속 공무원 중 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4장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책

- 제21조(공공부문의 온실가스 목표관리) ①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 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 하 "헌법기관등"이라 한다)는 기관별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간접적인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목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정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그 이행실적을 매년 정부에 통보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국가탄소중립목표 및 중장기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따른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한다)에 대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매년 설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③ 관리기관은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이행실적을 매년 정부에 제출하고 공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평가하여 제2항에 따른 목표에 미달하는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실적과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적에 대하여 등록부를 작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개 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
- ⑤ 정부는 헌법기관등과 관리기관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자료·정보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부문의 목표관 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다배출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 ① 정부는 국가탄소중립목표 및 중장기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간접적인 온실가스 배출을 포함한다)하는 업체(이하 "관리업체"라고 한다)별로 측정・보고・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관리업체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온실가스 배출 이력, 기술 수준, 국제경쟁력, 국가목표 등 국내여건 및 국제적 동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② 관리업체는 제1항에 따른 목표를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장별로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하여 측정·보고·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명세서를 작성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아 그 목표 준수 실적을 정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명세서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목표 준수 실적에 대하여 등록부를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④ 정부는 관리업체의 목표 준수 실적이 제1항에 따른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목표달성을 위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업체는 개선명령에 따른 이행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⑤ 정부는 관리업체가 제1항에 따른 목표를 달성하고 제4항에 따른 이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실태조사 및 진단, 자료 및 정보의 제공, 재정·경영·기술상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배출업체의 온실 가스 목표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온실가스 배출정보 등의 공개) ① 정부는 제21조제4항과 제22 조제3항에 따른 등록부에 포함된 주요 정보를 관리기관 및 관리업 체별로 공개할 수 있다.
 - ② 관리기관 및 관리업체는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로 인하여 영업 상의 비밀 등이 침해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를 요

청할 수 있다.

- ③ 정부는 관리기관 및 관리업체로부터 제2항에 따른 정보의 비공개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심사하고 그비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④ 등록부의 공개 범위·방법·절차 및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총량제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① 정부는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국가탄소중립목표 및 중장기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이하 "배출권거래제"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배출권거래제의 실시를 위한 배출허용량의 할당방법, 등록·관리 방법 및 거래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25조(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①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흡수량, 배출·흡수 계수(係數), 온실가스 관련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개발·검증·관리하는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 정보관리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에너지·산업공정·교통 ·건물·농업·폐기물·산림 등 부문별 소관 분야의 정보 및 통계 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각종 정보 및 통계를 작성 · 관리하거나 종

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국제기준에 상응하는 전문성 •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각종 정보 및 통계를 분석·검증하여 그 결과를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부적인 정보 및 통계 관리방법, 관리기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조(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관리) ① 자동차 등 교통수단을 제작하려는 자는 그 교통수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경쟁 체제에 부응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자동차의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을 개선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을 도모하고, 자동차 배기가스 중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각각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 제작업체(수입업체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어느 한 기준을 택하여 준수토록 할 수 있다.
 - ③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자동차 등을 구매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자동차 등을 구매하는 자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 ④ 정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호, 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탄소중립·고효율 교통수단의 제작·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 지원, 연구개발 및 관련 제도 개선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대중교통분담률, 철도수송분담률 등에 대한 중장기 및 단계별목표를 설정·관리하여야 한다.
- ⑥ 정부는 철도가 국가기간교통망의 근간이 되도록 철도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버스·지하철·경전철 등 대중교통수단을 확대하며, 자전거 등의 이용 및 연안해운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 ⑦ 정부는 온실가스와 대기오염을 최소화하고 교통체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며 대도시·수도권 등에서의 교통체 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교통수요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1. 혼잡통행료 및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
- 2. 버스·저공해차량 전용차로 및 승용차진입제한 지역 확대
- 3. 통행량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 확 대·구축
- 4.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친환경 이동수단의 도입·확대 방안 제27조(건축물부문의 온실가스 관리) ① 정부는 에너지이용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이하 "녹색건축물"이라 한다)을 확대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등급제 등의 정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건축물에 사용되는 에너지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건물에 대한 중장기 및 기간별 목표를 설정·관리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건축물의 설계·건설·유지관리·해체 등의 전 과정에서 에너지·자원 소비를 최소화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설계기준 및 허가·심의를 강화하는 등 설계·건설·유지관리·해 체 등의 단계별 대책 및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④ 정부는 기존 건축물이 녹색건축물로 전환되도록 에너지 진단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사업과 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⑤ 정부는 신축되거나 개축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력소비량 등에너지의 소비량을 조절·절약할 수 있는 지능형 계량기를 부착· 관리할 수 있다.
- ⑥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의 건축물이 녹색건축물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을 적용하고 그 이행사항을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 ⑦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신도시의 개발 또는 도시 재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물을 확대·보급하여야 한다.

- ⑧ 정부는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의 지원, 조세의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8조(도시 탄소중립 사업의 시행) ① 정부는 도시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도시 탄소중립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에 도시 탄소중립 사업의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 탄소중립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대상 선정, 사업 시행의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탄소흡수원 확충 등) ① 정부는 탄소흡수원의 확충을 위하여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신규조림, 재조림, 식생복구 및 산림경영(이하 "신규조림등"이라 한다)을 적극적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사업자가 신규조림등을 자발적으로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③ 정부는 농지, 연안습지, 바다숲(바다 속에 조성하는 우뭇가사리 등의 해조류군을 말한다), 산림의 보전·조성등을 통하여 탄소흡수원을 대폭 확충하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활용을 촉진하여야한다.

- 제30조(온실가스 감축 및 흡수기술의 육성) ① 정부는 국가탄소중립목표 및 중장기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 및 흡수기술(탄소포집저장기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신규 온실가스 감축 및 흡수기술에 관하여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4까지, 제44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46조를 준용한다. 이경우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는 "온실가스 감축 및 흡수기술"로, "기술·서비스"는 "기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환경부장관"으로 본다.

제5장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시책

- 제31조(기후위기 감시·예측 등) ① 정부는 기상 및 기후현상에 대한 관측·예측·정보제공 및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기후정보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한 감시·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생물자원 및 수자원 등의 변화 상황과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 기후위기로 인한 영향을 조사·분석하기 위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관련 전문기관의 설립 및 지원,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기후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과 제2항에 따른 시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2조(기후위기 취약성평가) ① 정부는 기후위기로 인한 생태계, 생물다양성, 대기, 수자원·수질, 건강·보건, 농업·식품·축산, 산림, 해양·수산, 국토, 연안, 안전·방재, 산업·에너지 등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을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 취약성 평가 결과를 국가전략, 광역종합계획, 지역종합계획 및 소관 계획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 취약성 조사·평가 방법과 그 결과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3조(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물 관리)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국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과 가뭄 등에 대비한 안정적인 수 자원의 확보
 - 2. 물 절약 등 수요관리, 적극적인 빗물관리 및 하수 재이용 등 물 순환 체계의 정비 및 수해의 예방
 - 3. 수생태계의 보전·관리와 수질개선

- 4. 자연친화적인 하천의 보전 · 복원
- 5. 수질오염 예방·처리를 위한 기술 개발 및 관련 서비스 제공 등 제34조(친환경 농림수산의 촉진) ①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을 개발하여 화학비료·자재와 농약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친환경·유기농 농수산물 및 나무제품의 생산·유통 및 소비를 확산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신품종 개량 등을 통하여 식량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35조(녹색국토의 관리) ① 정부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이 경제발전 및 사회개발과 조화를 이루는 국토(이하 "녹색국토"라 한다)를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종합계획·도시·군기본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을 제3조에 따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원칙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녹색국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1. 산림·녹지의 확충 및 광역생태축 보전
 - 2. 해양의 친환경적 개발ㆍ이용ㆍ보존
 - 3. 탄소중립 항만의 건설 및 기존 항만의 탄소중립 항만으로의 전환
 - 4. 친환경 교통체계의 확충
 - 5. 자연재해로 인한 국토 피해의 완화
 - 6. 그 밖에 녹색국토 조성에 관한 사항

③ 정부는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제6장 녹색성장 촉진을 위한 시책

- 제36조(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기본원칙) ① 정부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가경 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경제(이하 "녹색경제"라 한다)를 구현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녹색경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금융·산업·과학기술 ·환경·국토·문화 등 다양한 부문을 통합적 관점에서 균형 있게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새로운 녹색산업의 창출, 기존 산업의 녹색산업으로의 전환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 등을 통하여 에너지·자원 다소비형 산업구조가 녹색산업구조로 단계적으로 전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정부는 녹색성장을 추진할 때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저소득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과 배려를 하여야 한다.
- 제37조(녹색경제·녹색산업의 육성·지원) ① 정부는 녹색경제를 구현 함으로써 국가경제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새로운 녹색산업을 발굴·육성하는 등 녹색경제·녹색산업의 육성

-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녹색경제·녹색산업의 육성·지원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국내외 경제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 2. 기존 산업의 녹색산업 구조로의 단계적 전환에 관한 사항
- 3. 녹색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중장기·단계별 목표, 추진전략에 관 한 사항
- 4. 녹색산업의 신성장동력으로의 육성 · 지원에 관한 사항
- 5. 전기·정보통신·교통시설 등 기존 국가기반시설의 친환경 구조 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 6. 녹색경영을 위한 자문서비스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 7. 녹색산업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녹색경제 · 녹색산업의 촉진에 관한 사항
- 제38조(자원순환의 촉진) ① 정부는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는 등 자원순환의 촉진과 자원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자원순환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 산업의 육성·지원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자원순환 촉진 및 자원생산성 제고 목표설정
 - 2. 자원의 수급 및 관리

- 3. 유해하거나 재제조 · 재활용이 어려운 물질의 사용억제
- 4. 폐기물 발생의 억제 및 재제조·재활용 등 재자원화
- 5. 에너지자원으로 이용되는 목재, 식물, 농산물 등 바이오매스의 수 집·활용
- 6. 자원순환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의 육성
- 7. 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인력양성 등에 관한 사항 제39조(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① 정부는 기업의 녹색경영을 지원·촉진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기업의 녹색경영을 지원·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친환경 생산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술지원
 - 2. 기업의 에너지·자원 이용 효율화,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실적, 산림조성 및 자연환경 보전, 지속가능발전 정보 등 녹색경영 성과 의 공개
 - 3.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에 대한 지원
- 4. 그 밖에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위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제40조(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의 촉진) ① 정부는 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1. 녹색기술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 분석 및 제공
 - 2. 녹색기술 평가기법의 개발 및 보급

- 3. 녹색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의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 4. 녹색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국제협력 등
- ② 정부는 정보통신·나노·생명공학 기술 등의 융합을 촉진하고 녹색기술의 지식재산권화를 통하여 탄소중립 녹색성장 지식기반경 제로의 이행을 신속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 ③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에 제1항의 시책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41조(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정부는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금융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야 한다.
 - 1. 녹색경제 및 녹색산업의 지원 등을 위한 재원의 조성 및 자금 지원
 - 2.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
 - 3.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 4. 기업의 녹색경영 정보에 대한 공시제도 등의 강화 및 녹색경영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 5. 탄소시장(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온실가스의 감축 ·흡수 실적 등을 거래하는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설 및 거래 활성화 등
- 제42조(조세 제도 운영) 정부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

중립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을 발생시키거나 에너지·자원 이용효율이 낮은 재화와 서비스를 줄이고 환경친화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국가의 조세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 제43조(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는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은 녹색기술·녹색산업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거나 보증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있다.
 -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4조(녹색기술·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등) ① 정부는 국내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녹색기술·녹색산업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에 부합되도록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고 녹색기술·녹색산업의 국제표준화 활동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녹색기술·녹색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기술, 녹색사업,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하거나 녹색전문기업 확인, 공공기관의 구매의무화 또는 기술지도 등을 할 수 있다.
- ③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이나 확인을 받은 경우
- 2. 중대한 결함이 있어 인증이나 확인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표준화, 인증 및 취소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5조(중소기업의 지원 등) 정부는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및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1.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에 대한 우선 지원
 - 2.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기술이전 및 기술인력 파견 에 대한 지원
 - 3.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사업화의 촉진
 - 4. 녹색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공공시설의 이용
 - 5. 녹색기술 · 녹색산업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 공급 및 국외진출
- 6. 그 밖에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및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 제46조(녹색기술·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 등) ① 정부는 녹색

기술의 공동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공동활용 및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을 위한 집적지와 단지를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산업단지별 산업집적 현황에 관한 사항
- 2.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역량강화 및 상호연계에 관한 사항
- 3.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 및 우수한 녹색기술·녹색산업 인력의 유치에 관한 사항
- 4. 녹색기술·녹색산업의 사업추진체계 및 재원조달방안
- ③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녹색기술 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를 조성하게 할 수 있다.
-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같은 항에 따른 녹색기술·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 제47조(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 등) ① 정부는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확대하여 모든 국민이 녹색성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산업분야별 노동력의 원활한 이동·전환을 촉진하고 국민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며,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장 공정전환의 추진

- 제48조(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 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기후위기에 취 약한 계층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 등의 현황과 일자리 감소, 지역 경제의 영향 등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지역 및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 대책과 재난대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사업 전환이나 구조적 실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업의 발생 등 고용상태의 영향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재교육, 재취업 및 전직 등을 지원하거나 생활지원을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9조(공정전환특별지구의 지정 등) ① 정부는 일자리 감소, 지역경 제 침체,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고용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되는 지역과 기후위기 심화에 따라 반복적으로 자연재난의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정전환특별지구(이하 "특별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특별지구에서의 기후위기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상·금융상·세제상의 지원 또는 보조금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특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1. 특별지구의 지정이 필요 없게 된 경우
- 2. 지구의 지정내용에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 3.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 ④ 정부는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특별지구를 지정·변경 또는 해제 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0조(공정전환지원센터의 설립 등)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등 사회·경제 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지역에 지역별·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한 공 정전환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공정전환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탄소중립 녹색성장 이행에 따른 지역사회의 영향 관련 실태조사
 - 2. 지역경제의 전환 방안, 일자리 전환모델의 연구 및 지원

- 3. 재취업, 전직 등 직업전환을 위한 교육훈련 및 취업의 지원
- 4. 업종전환 등 기업의 사업전환에 관한 컨설팅 및 지원
- 5.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정전환지원센터의 설립·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정전환지원센터의 설립·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1조(사업전환 지원) ① 정부는 기후위기 또는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요청하는 경우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전환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전환 지원의 대상, 선정절차, 지원의 종류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2조(자산손실 위험의 최소화 등) ①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등에 대하여 탄소중립 이행이 기존 자산가치의 하락 등 기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기 전환을 지원하는 등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투자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기업 등 경제주체가 기후위

기로 인한 자산손실 등의 위험을 투명하게 공시·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8장 탄소중립 이행의 확산

- 제53조(지방자체단체의 탄소중립 이행 확산)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발적인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촉진하고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참여하는 탄소중립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실천연대의 구성원은 원활한 협력과 체계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 대표가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시·도 및 시·군·구별로 각각 정할 수 있다.
 - ③ 실천연대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1. 2050년 탄소중립의 실현
 - 2.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사업의 발굴과 지원
 - 3. 탄소중립을 위한 선도적인 기후행동 실천 및 확산
 - 4. 기후위기 대응 및 적응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과 공감대 형성
 - 5. 기후위기 대응 및 적응을 위한 상호 소통 및 공동 협력
 - 6.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 및 적응, 탄소중립 녹색성장 이행 촉진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 ④ 환경부장관은 실천연대의 운영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실천연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천연대 및 사무국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4조(탄소중립 생활의 확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탄소 중립을 지향하는 생활방식을 확산하고, 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탄소 중립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며,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생산 ·소비문화를 증진할 수 있도록 범국민적인 생활 실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소비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여신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등을 활용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생활 방식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 1. 가정용 또는 상업용 건물을 대상으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을 절감하는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 2. 승용·승합자동차의 연간 주행거리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 여하는 제도

- 3. 그 밖에 탄소중립에 관한 국민 인식을 확산하고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도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생활 실천 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 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문·방송· 인터넷포털 등 대중매체를 포함하는 다양한 수단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확대함으로써 기업과 국민 등이 관련 정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탄소중립 생활·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정부는 탄소중립 생활의 실천이 전 세대에 걸쳐 확대될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를 포함한 교재 개발 및 교원 연수 등 학교교육을 강화하고, 일반 교양교육, 직업교육, 기초평생교육 과정 등과 통합・연계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하며,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 관련전문인력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55조(탄소중립 녹색성장을 위한 생산·소비 문화의 확산) ① 정부는 재화의 생산·소비·운반 및 폐기(이하 "생산등"이라 한다)의 전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에 에너지 소비량 및 탄소배출량 등이 합리적으로 연계·반영되고 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공개·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재화의 생산등의 전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량,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량 등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에 관 한 정보를 축적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④ 정부는 녹색제품의 사용·소비의 촉진 및 확산을 위하여 재화의 생산자와 판매자 등으로 하여금 그 재화의 생산등의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양에 대한 정보 또는 등급을 소비자가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9장 기후위기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

- 제56조(기후위기대응기금의 설치) ①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효율적 이며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대응기금(이하 "기금"이 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의 예수금(預受金)
- 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라 배출권을 유상으로 할당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입
- ③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위기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제5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 1. 기후위기 대응 추진기반 구축
 - 2.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 정비 및 사업 지원
 -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지원
 - 4. 기후위기 예측과 감시·예측을 위한 정부 및 연구기관의 사업 지원
 - 5.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위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지원
 - 6. 특별지구에 대한 지원
 - 7.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관련 기업의 지원
 - 8. 협회·단체 등 민간부문의 기후위기 대응활동 지원
 - 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 · 홍보 및 인력양성 사업의 지원
 - 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 11. 정부의 융자금 또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황

- 12.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58조(기금의 관리 · 운용) ① 기금은 환경부장관이 운용 · 관리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 재정법」 제74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장 보칙

- 제59조(국제협력의 증진) ① 정부는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기후위기대응 및 적응,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협력 및 표준화, 공동조사·연구 등의 활동에 참여하여 국제협력, 국외진출 등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 ② 정부는 저개발국가가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의 달성을 꾀할 수 있도록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는 등 국제사회의 기대에 맞는 국가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의 외교적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0조(국제규범 대응) ① 정부는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제정하거나 도입하려는 탄소중립 녹색성장과 관련된 제도·정책에 관한동향과 정보를 수집·조사·분석하여 관련 제도·정책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제1항의 동향·정보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기업·국민들에게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과 국민들이 대응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61조(국가보고서 등의 작성·제출) ① 정부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 제연합 기본협약」 및 「파리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당 사국총회에 제출할 수 있다.
 - 1.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따른 국가보고서
 - 2. 「파리협정」에 따른 국가결정기여
 - 3. 「파리협정」에 따른 적응보고서
 - 4. 「파리협정」에 따른 격년투명성보고서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고서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가보고서 등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국가보고서 등의 작성 및 자료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2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후위기대 응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6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2.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한 자
 - 3. 제21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